

■ 최신 법령 ■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

1.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이 개정(법률 제15960호, 2018. 12. 18. 공포, 2019. 6. 19. 시행)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,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그 시설·설비 현황에 관한 사항,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황 및 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. 또한,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에는 현장실습 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별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, 현장실습 사전교육 실시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.

2. 다운로드 : [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\(2019. 6. 19. 시행\)](#)